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1. 3. 5.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2월 26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년 2월 26일

다. 상정일자 : 제7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2001. 3. 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토목과장 이 동 호

가. 제안이유

행정자치부의 규제정비시책과 관련, 동 조례의 규제조항 및 현실과 부적합한 조항을 개정 또는 완화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체육시설(경기장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종전에는 시설관리 책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신고로 완화함. (안 제3조제1항)

○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사유중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고 허가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이를 삭제함. (안 제7조제4호)

○ 입장권 없이 체육시설에 입장할 수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확인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로 확대하여 개정함. (안 제14조제4호)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사유중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등 일부 사항은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고 허가권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삭제함. (안 제15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정비시책과 관련하여 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동 조례의 규제조항을 완화하고, 부적합한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3조제1항중 현행규정은 사용자가 변경시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로 같음하고, 안 제14조제4호에서는 65세이상의 자는 체육시설에 무료입장할 수 있으나 연령확인방법을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로 국한하였으나 이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휴대한 65세이상의 자로 신분확인 방법을 확대하여 노인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음.

○ 안 제7조 체육시설 사용제한 규정과 안 제15조 체육시설 사용허가취소 및 정지에 관한 규정 중 기준이 모호하고 허가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규정은 삭제하는 등 동 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허가에서 신고로 바뀐것의 차이는?

○ 답변요지(이동호 토목과장) : 규제정비시책에 의거 허가사항을 신고로 같음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임.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관내 체육시설은?

○ 답변요지(이동호 토목과장) : 11개소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1.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의 규제정비시책과 관련, 동조례의 규제조항 및 현실과 부적합한 조항을 개정 또는 완화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체육시설(경기장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종전에는 시설관리 책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신고로 완화함.(안 제3조제1항)

나.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사유중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고 허가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7조제4호)

다. 입장권 없이 체육시설에 입장할 수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확인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로 확대하여 개정함.(안 제14조제4호)

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사유중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등 일부 사항은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고 허가권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삭제함.

(안 제15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

3. 개정근거

가. 행정규제기본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

나.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1호)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1. 1. 31 ~ 2. 2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1. 2. 23)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3조제1항중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를 “다만,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중 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 제4호중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를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휴대한 자”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7.(생 략)</p> <p>8. “어린이”라 함은 <u>국민학교</u> 학생과 6세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p> <p>9.~12.(생 략)</p>	<p>제2조(정의) -----</p> <p>-----</p> <p>1.~7.(현행과 같음)</p> <p>8. -----<u>초등학교</u>-----</p> <p>-----</p> <p>9.~12.(현행과 같음)</p>
<p>제3조(사용허가)①<u>체육시설(경기장등)</u>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관리 책임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u>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u></p> <p>②~③(생 략)</p>	<p>제3조(사용허가) ①-----</p> <p>-----</p> <p>-----</p> <p><u>다만,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u></p>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7조(사용제한)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p> <p>1. ~ 3.(생 략)</p> <p>4. <u>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u></p>	<p>제7조(사용제한) -----</p> <p>-----</p> <p>-----</p> <p>1. ~ 3.(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14조(입장권매표)입장권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다음 각호1에 해당할 때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p> <p>1 ~ 3.(생 략)</p> <p>4. <u>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u></p>	<p>제14조(입장권매표)-----</p> <p>-----</p> <p>-----</p> <p>1. ~ 3.(현행과 같음)</p> <p>4. -----<u>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확인이나 가능한 증명서를 휴대한 자</u></p>

현행	개정안
<p>제15조(사용허가취소 및 정지)①구 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p> <p>1. ~ 3.(생략)</p> <p>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p> <p>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p> <p>②(생략)</p>	<p>제15조(사용허가취소 및 정지)①---</p> <p>-----</p> <p>-----</p> <p>-----</p> <p>1. ~ 3.(현행과 같음) (삭제)</p> <p>(삭제)</p> <p>②(현행과 같음)</p>